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00호 2013. 8. 21. (수)

[고 시]

0	정선군 고시 제2013-68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공 고】	
0	정선군 공고 제2013-575호 정선(증산) 제2공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안)	
	공람·공고	7
0	정선군공고 제2013-583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녹지)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9
\circ	정선군공고 2013-592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고 1	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3-68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정선군고시 제2013-22(2013.3.22.)호로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4 항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제9항,「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취지: 남면 낙동리 충무화학 지구단위계획구역 A-3 획지내 신기술 장비인 석회석유체 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제품생산을 도모하고자, 높이차 이용을 통해 생산물이 제조되는 공작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공작물의 높이(H=49m) 계획 수립 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동일 획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계획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99-1번지 일원

다. 면 적: 115,813m²(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주)충무화학 대표이사 유 상 경

마.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²)		비고
<u>ਦ</u> ਦ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15,813	-	115,813	
계획관리지역	115,813	-	115,813	

2. 용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	충무화학 공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정선군 남면 낙동리 20번지 일원	-	115,813	정선군 고시 94-25호 1994.2.14	1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	7 M M	7 dol 11 H	0) =1		면 적 (m²)		최 초	ul ¬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2	충무화학 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20번지 일원	115,813	-	115,813	정선군 고시 94-25호 1994.2.14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없음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7.11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m²)									
계	2	390	4,200	1	230	2,280	-	-	-	1	160	1,920
중로	1	160	1,920	-	-	-	-	-	-	1	160	1,920
소로	1	230	2,280	1	230	2,280	-	-	-	-	-	-

(2)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7 H		규	모		-1 1	연 장	-1 F	x 1)	사용	주 요	최 초	, 1) ¬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합	계	2	2			390						
중로	합계		1			16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60	낙동리 50	낙동리 47-1	일반 도로	지구단위 진입부	강원도고시 제2012-263호 2012.8.17	
소로	합계		1			23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30	낙동리 28-1	낙동리 산185-4	일반 도로	공장용지	정선고 제25호 1994.2.14	

2) 방재시설

가) 하천

(1) 하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폭원	면적	최초	
구분	보인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m)	〒セ (m)	(m²)	역조 결정일	비고
기정	1	거칠현천	소하천	낙동리 산185-5	낙동리 28-1	기숙사	366	12~35	6,542	강원도고시 제2012-263호 2012.8.17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 면	7	가구 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 감	บไ ¬
표시번호		명 칭	(m²)	위 치	변경면적 (㎡)	(m²)	비고
		계	115,813	-	115,813	-	
	А	공 업 용 지	59,053	낙동리 43번지 일원	59,130	-	
A ~ D	В	주 거 용 지	1,121	낙동리 53번지 일원	1,121	-	
	С	공공시설 용 지	23,256	낙동리 28-1번지 일원	23,241	-	
	D	녹 지 용 지	32,383	낙동리 산199번지 일원	32,321	-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가 구 번 호	기정	가 구		증 감	nl ¬
표시번호		명 칭	면적(m²)	위 치	변경면적(m²)	(m²)	비고
		계	115,813		115,813	-	
		공 업 용 지	59,053		59,130	-	
	A-1	레미콘 및 석회석가공시설	6,185	낙동리 49-1번지 일원	6,185	-	
	A-2	사 무 실	1,839	낙동리 54번지 일원	1,839	-	
A	A-3	아 스 콘 공 장	19,742	낙동리 43번지 일원	19,674	-	
	A-4	중질탄산칼슘공장	19,488	낙동리 29-2번지 일원	19,633	-	
	A-5	석회석파쇄 및 가공공장	4,744	낙동리 27번지 일원	4,744	-	
	A-6	중장비 관리 및 사무실	7,055	낙동리 산166번지 일원	7,055	-	
В	B-1	주거용지(기숙사)	1,121	낙동리 53번지 일원	1,121	-	
		공 공 시 설 용 지	23,256		23,241	-	
	C-1	도 로	15,979	낙동리 산185-5번지 일원	15,964	-	
С	C-2	소 차 처	2,962	낙동리 28-1번지 일원	2,962	-	
	소 하 천 C-3 3,064	극중터 40 ⁻ 1단시 칼현	3,064	-			
	C-4	오수처리장	1,251	낙동리 49-1번지 일원	1,251	-	

도면		가 구 번 호	기정	가 구		증 감	nl =
표시번호		명 칭	면적(m²)	위 치	변경면적(m²)	(m²)	비고
		녹 지 용 지	32,383		32,321	-	
	D-1	경 관 녹 지	4,632	낙동리 산200번지 일원	4,632	-	
	D-2	경 선 목 시	6,616	낙동리 20번지 일원	6,616	-	
D	D-3		3,628	낙동리 49-3번지 일원	3,628	-	
	D-4		2,482	낙동리 53번지 일원	2,482	-	
	D-5	완 충 녹 지	5,940	낙동리 41번지 일원	5,904	-	
	D-6		3,901	낙동리 39번지 일원	3,875	-	
	D-7		5,184	낙동리 25번지 일원	5,184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u>8</u>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레미콘 및 석회석가공시설)												
			건 펴	율	16%이하												
기정	A-1	낙동리 49-1번지	용 적	률	16%이하												
		일원	높	0]	3층 이하(20m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u>8</u>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사 무 실)												
			건 폐	율	36%이하												
기정	A-2	낙동리 54번지 일원	용적	률	100%০ ট												
			근 건	글면	글 전 -	근 년	높	이	3층 이하(20m 이하)								
			배 치 도면참조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u> </u>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생석회제조공장, 아스콘공장 및 부대시설)									
						,_,	건 폐	율	23%이하								
기정	A-3		용적	률	23%이하												
		일원	높	0]	3층 이하(20m 이하)												
														배	え]	도면참조	
			형	태	경량철골구조												
			<u>용</u>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생석회제조공장, 아스콘공장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23%이하												
		낙동리	용 적	률	23%이하												
변경	A-3 산199-	산199-1번지 일원	높	이	3층 이하(20m 이하) 공작물높이 49m이하												
			배	え]	도면참조 (아스콘골재장, 제품창고, 유체소성로1, 아스콘공장2 일부변경)												
			형	태	경량철골구조 및 철근콘트리트구조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8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중질탄산칼슘공장)															
			건 펴	율	21%০ ই															
기정	A-4	낙동리 29-2번지	용전	률	21%০ ট}															
		일원	높	0]	3층 이하(20m 이하)															
			배	ネ]	도면참조															
			형	태	경량철골구조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석회석파쇄 및 가공공장)															
			건 펴	율	26%০ ই															
기정	A-5	낙동리 28번지	용전	불	26%) ই															
		일원	높	0]	3층 이하(20m 이하)															
				배	초]	도면참조														
			형	태	경량철골구조															
		낙동리 20번지 일원	8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중장비관리및사무실)															
								건 펴	율	28%) ট										
기정	A-6															용 전	률	28%) ই		
10	11 0													높	0]	3층 이하(20m 이하)				
			형	태	경량철골구조															
		_ _ 낙동리 59번지					_					_	_	8	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2호 라목 공동주택(기숙사)				
																			건 펴	율
기정	B-1					용조	률	90%이하												
-10	D 1	일원	높	0]	3층 이하															
			배	え]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3-575호

정선(증산) 제2공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안) 공람·공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13번지 일원 강원도고시 2010-228호(2010.7.23)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된 정선(증산) 제2공원(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8월 12일

정 선 군 수

1.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건축규모(m²)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합 계		13,846	100.0	691	691		
공원시설	소 계	9,883	71.4	691	691		
	교양시설	181	1.3	181	181	억새체험장	
	조경시설	2,652	19.1			조형물, 친수공간	
	편익시설	1,916	13.9	510	510	주차장, 특산물 매점, 화장실	
	휴양시설	2,387	17.3			파고라, 정자, 억새마당, 잔디블럭	
	도로 및 광장	2,747	19.8				
녹 지		3,963	28.6				

나) 공원조성계획

д н		면 적(m²)	구성비(%)	건축규모(m²)		ul =	
구 분			면 석(m)	〒78円(%)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합 계		13,846	100.0	691	691	
공원시설	교양시설	억새체험장	181	1.3	181	181	
	조경시설	소 계	2,652	19.1			
		조형물	34	0.2			
		친수공간	2,618	18.9			
	편익시설	소 계	1,916	13.9	510	510	
		주차장	1,406	10.2			
		특산물 매점1	210	1.5	210	210	
		특산물 매점2	269	1.9	269	269	
		화장실	31	0.3	31	31	
	휴양시설	소 계	2,387	17.3			
		파고라	157	1.1			
		정자	139	1.0			
		억새마당	1,844	13.4			
		잔디블럭	247	1.8			
	도로 및 광장		2,747	19.8			
녹 지		3,963	28.6				

2.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남면사무소

3.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이상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남면사무소로 서면제출

5.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3-583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녹지)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및 시행령 제22조, 「정선군 도시계획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 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 2. 공람내용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81,088m²)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 변경없음
 - 사북동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A=81,088m²)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 당 초 : 중로 3류 1개노선 신설 / 739m
- 변 경 : 중로 3류 1개노선(739m)을 단지내 도로로 계획(군계획시설 제외)

2) 공간시설

• 당 초 : 경관녹지 2개소 / 1,178㎡

• 변 경 : 경관녹지 2개소 / 1.178㎡, 어린이공원 2개소 / 3.255㎡

-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 열람장소 비치도면 및 조서와 같음
- 3.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사북읍사무소
- 4.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사북읍사무소에 서면제출
-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2013-592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결정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3. 8. 20.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내역

가. 정정기준일 : 2013. 8. 20.

나. 대 상: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275번지내 1호주택

다. 내 용: 과거년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 정정함.

소재지	및 기준일	당초공시가격	정정공시가격	사 유
정선군	2012.1.1.기준 86,900,000원 59,500,000원		주택가격의	
화암면	2012.1.1./ 亡 	80,900,000원	59,500,000편	위산(違算)
백전리	00101173	88,000,000원	E0 700 000 ol	주택가격의
275번지	2013.1.1.기준		59,700,000원	위산(違算)

라. 가격열람장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2. 개별주택 공시가격 정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가. 기 : 2013. 8. 20. ~ 9. 19.(30일)

나. 신청자격: 주택(건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법률)

다. 제출장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라.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 하여 개별 통지함.